

의안번호	2210729
의 퇴 인	문대림 의원
회 답 일	2025. 6. 30.
추계번호	25C3137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23조의2 (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)	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적용 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포함 ※ 현행법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자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조의2 (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법제처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,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제시함¹⁾

1) 법령해석 사례 안전번호 20-0516

- 보건복지부도 장사정보서비스포털(e하늘)을 통해 현행법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음
- 다만, 현재 일부 공설화장시설은 사용료 면제자의 유골을 화장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유골 화장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, 전국 61개 공설화장시설(미운 영종인 1개소 포함) 중 두 곳에서 희생·공헌자 유골 화장 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 - － A시설은 관내의 경우 4만원, 관외의 경우 40만원을, B시설은 관내의 경우 4만원, 관외의 경우 20만원을 부과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현행법 유지 시 유료로 유골 화장을 하게 될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및 희생·공헌자의 수와 화장지 위치(해당 시설의 관내·관외 여부)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